

「달달 하나 적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달달 하나 적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은 만14세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

제3조 가입기간 및 한도

이 예금은 가입기간을 정하여 판매하며, 판매기간 또는 한도는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제4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5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.

제6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 30만원 이하입니다.

제7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

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만원이상 3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.

제8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9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9조 우대금리

- ① 이 예금은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. 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우대 항목	내 용
급여하나 우대	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가입일로부터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, 6회 이상 통해 급여 ^(주1) 입금 실적 보유한 경우 (월1회 인정)
하나카드 결제	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가입일로부터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, 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(신용/체크)을 보유한 경우 (월1회 인정)
이벤트 특별 금리	이 예금 가입시 상품설명서 및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벤트 특별금리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
(주1) 급여 인정 기준 :

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
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

②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
③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

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

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

② 이 예금 신규 가입시 금리 우대 쿠폰을 적용한 경우, 쿠폰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.

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 일부해지

-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계약기간내 2회까지 입금 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가능하며, 일부 해지금액에 대하여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만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부 칙

1. 이 특약은 2025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
2. 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